[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	○ 25대이상	○ 1대	○ 1대이상
최저자본금	○ 1억원	없 음	○ 5천만원(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	없 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 ○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중형·대형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비고

1.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판매·제조업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당해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